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100077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10007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56720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정훈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호

변론종결 2024. 9. 5.

판결선고 2024. 10. 2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567207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2. 경기도 화성시 H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건물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시공하여 2016. 5. 17.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의 매형인 I은 2016. 8. 3. 경기도 화성시 J 외 1필지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하 ‘I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건물은 D이 시공하여 2016. 12.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1. 14. D과 사이에 ‘화성시 일원’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또는 계약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계약에 기하여 D이 원고에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채무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2. 6.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21. 4. 1.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과 화성일대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속적 레미콘공급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건축주이자 사내이사로서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K에 ① 2020. 12. 31.부터 2021. 3. 31.까지 경기도 화성시 E, ② 2021. 1. 31.부터 2021. 5. 31.까지 경기도 화성시 F, ③ 2021. 4. 30.부터 2021. 5. 31.까지 경기도 화성시 G에 합계 113,263,700원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최고액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청구 채권은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률 및 법리

- 1)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보증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가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 3) 보증인보호법 제1조는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는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계약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는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하는 개인이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타인의 채무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4663 판결).

나. 피고가 보증인보호법상 보증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그 문언상 계속적 레미콘 공급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차례로 피고가 보증인보호법상 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건축주로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소유 건물과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진행되던 I 소유 건물 공사 당시 원고의 영업사원 L이 건축주의 보증을 요구하여, I을 대신하여 건축주 역할을 하던 피고가 I 소유 건물의 건축 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에 한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축주로서 주채무자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자기가 건축주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피고 소유 건물은 이미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건축주로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서에는 ‘현장명 및 공사명’란에 ‘화성 일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주와의 관계’란 및 ‘주문자와의 관계’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고는 I 소유 건물의 건축주가 아니므로 I 소유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스스로 I 소유 건물 신축 당시 I을 대신하여 건축주 역할을 하였다고 자인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건축주로서 D와 원고 사이의 계속적 레미콘 공급계약을 위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원고는, 피고가 D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증인보호법상

보증인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후 2017. 2. 6.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보증계약에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이 3년이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일인 2016. 11. 14.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11. 14.에는 보증기간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주채무자 D에 대한 채권은 위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0. 12.

31.부터 2021. 5. 31.까지 공급한 레미콘대금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안동철, 판사 이효진